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농지연금' 신청·접수

김상준기자 | 승인 2025.05.28 17:44 | 11면

고령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소득안정 도모



▲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지사장 김동원)는 지난 27일 고령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월 직불금을 지급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과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10년이상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한 65세이상 84세이하의 농업인 이면서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경우에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3년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농지를 매도해 이양하는 방식”(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방식과 청년농업인 등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도 가능)과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해 직불금을 받는 두가지 방법 중 선택을 할수 있다.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이란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연금 지급기간이 종료되면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의 농지연금이다.

▲ 직불금 지급은 최대 10년간, 84세까지로 “농지를 매도하는 상품”의 경우 1ha당 매월 50만원(최대200만원),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상품”의 경우 1ha당 매월 40만원(최대160만원)의 직불금을 받을수 있다.

▲ 농지연금은 5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60세이상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으로 최대 월3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김동원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장은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및 “ 농지연금”을 통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고령화로 인해 소멸위기의 농촌에 청년농업인의 유입을 기대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은행사업 및 지원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대표전화(1577-7770)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930-8263)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준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준기자